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성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559

발의연월일: 2025. 2. 27.

발 의 자 : 허성무 · 김문수 · 박용갑

이병진 • 문금주 • 박 정

박선원 · 김동아 · 이연희

윤종오 • 윤준병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시책 관련 전문 연구평가기관에 대해 조사,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, 이에 따라 중 소벤처기업연구원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.

그런데 보조금은 운용에 경직성이 있어 중장기적 연구과제 기획 및 추진이 어렵고 전문연구인력 유치, 다른 기관과의 합동연구 등에 한계 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또한,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·운영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, 현행법상 업무 위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출연기관으로 전환하여 주요 정책 현안

에 적시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,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 20조의2제7항·제20조의3제4항 신설 및 제25조의2).

법률 제 호

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제7항 중 "설치·운영할 수 있다"를 "설치·운영하거나 관련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"로 한다.

제20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·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25조의2제4항 중 "운영 등"을 "운영 및 사업"으로, "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"를 "출연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제8호를 제9호로하며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9호(종전의제8호) 중 "제7호"를 "제8호"로 한다.

8.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의2(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	제20조의2(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
폼의 구축·운영) ① ~ ⑥ (생	폼의 구축·운영) ① ~ ⑥ (현
략)	행과 같음)
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	⑦
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	
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	<u>설</u>
설치・운영할 수 있다.	<u>치·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</u>
	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
	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
	<u>장관이 지정하는 기관·단체에</u>
	위탁할 수 있다.
⑧ (생 략)	⑧ (현행과 같음)
제20조의3(중소기업 지원사업의	제20조의3(중소기업 지원사업의
효율화) ① ~ ③ (생 략)	효율화) ① ~ ③ (현행과 같
	음)
<u><신 설></u>	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
	항에 따른 업무를 제25조의2에
	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
	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
	는 기관・단체에 위탁할 수 있
	<u>다.</u>
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

제25조의2(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
설립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<u>운영 및</u>
<u>사업</u>
<u>출연한다</u> .
5
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
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<u>9.</u> <u>제8호</u>

⑥ ~ ⑧ (현행과 같음)

⑥ ~ ⑧ (생 략)